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30호서식] <개정 2020. 4. 17.>

# (　　년도)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보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　　(앞쪽)

| 접수번호 | | 접수일자 |
|---|---|---|
| 신고인 | ①상호(명칭) | ②성명(대표자) |
| | ③업종 | ④허가번호<br>제　　호 |
| | ⑤소재지(사무실)<br>(전화번호:　　) | |
| | ⑥영업대상 건설폐기물 | |

| | | |
|---|---|---|
| ⑦시설 및 장비 등 명세 | 시설・장비명 | 규격(처리능력) |
| | 소재지 | |
| | 설치 승인일 | 사용 개시일 |
| | 자본금 | |

⑧건설폐기물 수탁 및 처리 내용

| 건설 폐기물 종류 | 성상 | 수탁 내용 | | | 중간처리량(톤) | | | | | 보관량 (톤)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배출자 | 소재지 | 수탁량 (톤) | 소계 | 파쇄・분쇄 | 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 | 소각 | 그 밖의 처리 방법 | |
| | | | | | | | | | | |
| 총계 | | | | | | | | | | |

⑨중간처리 후 발생 폐기물 처리내용

| 폐기물 종류 | 발생량(톤) | 처리자 | 처리방법 | 처리량(톤)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
| 총계 | | | | |

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.

년　　월　　일

보고자　　(서명 또는 인)

**시・도지사** 귀하

210㎜×297㎜ [백상지 80g/㎡]

## 작 성 방 법

1. ⑧란 중 건설폐기물 종류는 폐콘크리트, 폐아스팔트콘크리트, 폐벽돌, 폐블록, 폐기와, 폐목재, 폐합성수지, 폐섬유, 폐벽지, 건설오니, 폐금속류, 폐유리, 폐타일 및 폐도자기, 폐보드류, 폐판넬, 건설폐토석, 혼합건설폐기물,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(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)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.
2. ⑧란 중 성상은 성상코드번호([1] 고상, [2] 액상)를 기재해야 합니다.
3. ⑧란 중 수탁 내용, 중간처리량 및 보관량은 건설폐기물을 수탁한 배출자별로 구분하여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.

※ 이 보고서에 수록된 귀하(사)의 자료는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.